

# 시종면 종합감사 결과

## I. 감사개요

### 1. 감사배경 및 목적

-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·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
- 수입, 지출,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
-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·누락·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

### 2. 감사대상 및 범위

- 감사대상 : 시종면
- 감사기간 : 2018. 11. 06. ~ 2018. 11. 09. (4일간)
- 대상기간 : 2016. 05. 21. ~ 2018. 11. 05. (2개년)
- 감사자 : 기획감사실장 외 6인

### 3. 감사중점사항

- 공사·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
- 기획, 충무행정, 문화·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
- 농정업무, 지역경제 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
-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
-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
-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
-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

#### 4. 주요위반사항 요약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일반행정 분야	민방위대 자원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시종면에서는 163명(지역 150, 직장 13)을 민방위대로 편성하고 5개대 민방위 대장에게는 민방위대 편성 결과를 통보하였으나, 민방위대원 158명중 18명을 제외한 140명에게는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통지하지 않는 사실이 있음. 【민방위기본법 제20조, 2018년도 민방위 편성지침(안전 건설과-27245(2017.12.17.)호】</li> </ul>
세출분야	특근매식비 현금영수증 미사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시종면에서는 “특근매식비 신용카드 지출현황”과 같이 2017년 2건 406,000원, 2018년 3건 1,081,000원 총 5건 1,487,000원의 특근 매식비를 집행하면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세출 예산 집행기준 적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 【지방공무원법 제48조,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(행정안전부 예규)】</li> </ul>
	이장 월정수당 지급일 지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시종면에서는 2016. 7. ~ 2018. 5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이장 월정수당 지급을 1일~8일 까지 지연 지급하여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 【지방공무원법 제48조, 영암군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】</li> </ul>
세무분야	주민세(재산분, 법인균등분) 과세자료 관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영암군사무분장규정 등에 의거 읍·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, 미납부한 2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민세(재산분, 법인균등분) 5건 395,260원이 누락되어 과세대상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 【영암군사무분장규정 및 재무과-17356(2018.7.3.)호】</li> </ul>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세무분야	취득세(건축물, 이륜차) 신고·납부 미확인 및 과세자료 누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하면 [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]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, 「영암군사무분장규정」 등에 의거 납세 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면 신고·납부 안내하고, 기한내에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하면, 취득세 과세자료를 군에 제출하여 부과·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, 이를 소홀히 하여 취득세 7건 1,223,570원이 누락된 사실이 있음. 【지방세법 제20조】</li> </ul>
사회복지 분야	영암군 어르신이용권 지원 관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시종면에서는 2016년~2018년까지 전입자 79명 중 58명에게만 지급하였으나 지급 매수를 미기재 하였을 뿐아니라, 나머지 21명은 미배부자로 확인됨. 또한, 매분기초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종합행정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마을별 배부하고 있지만 지급일, 이용권번호(000~000), 배부 매수(2, 4, 6, 8) 등을 기재되지 않아 지급 여부 민원발생시 확인 할 근거가 없는 등 어르신 이용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 【영암군 노인목욕비및이·미용비 지원조례 제2조】</li> </ul>
	의사무능력(미약)자 급여관리 절차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시종면에서는 2017년 3가구, 2018년 3가구에 대하여 상·하반기 급여관리 점검계획 미수립하였고, 급여지출은 급여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○○○(청각장애2급)의 급여관리인 ○○○(60.9.2/관계: 형수)님은 매월 800천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여 급여관리를 하였지만 체크카드 사용 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음.</li> </ul> <p>【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(보건복지부)】</p>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농업분야	주요가축 통계조사 실시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시종면에서는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하면서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 합동으로 통계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하나, 마을담당공무원과 합동 조사하지 않고 일부 마을이장에게 조사를 맡기거나 미취합, 조사결과 집계표가 없는 등 주요가축 통계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 【농업통계조사규칙 및 실시요령】</li> </ul>
	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사후관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『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35조 및 각종 농업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시설물 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(5년) 중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물, 농기계 장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대장 비치 및 년 1회이상 활용사항 점검하고, 각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에도, '15년~'17년까지 지원된 다목적 소형농기계사업, 농산물 소형저온 저장고 설치사업 등에 대해 당해년도 이후 '17년~'18년 현재까지 일부사업장을 점검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 【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친환경농업과-1348(2016.1.27.)호, -709(2017.1.12.)호】</li> </ul>
	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발급 심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시종면에서는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(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)에 의거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 접수시 취득대상자가 농업 경영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취득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 농지 주말·체험영농으로 처리하면서 2017년 14건, 1,432m<sup>2</sup>를 농업 경영계획서가 불필요함에도 첨부 발급, 1건 493m<sup>2</sup>를 농업경영 발급, 1건 909m<sup>2</sup>는 신청서 미기재 보완요구 없이 발급, 비농업 경영 발급 1건 등 처리한 사실이 있음. 【농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,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7조 제2항】</li> </ul>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농업분야	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고, 사전 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후 마을이장의 안내를 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한 자경 여부 등 농지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 해야 함에도,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는 등 실태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 【농지법 제10조 및 같은법 제49조 제2항, 농지법 제54조】</li> </ul>
건설도시 분야	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준공처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종면에서는 『2017년 시종 구산 송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』를 준공하면서 본 설계 내역에 공사실명제 간판설치 비용을 반영하였으나 미 시공한 채로 준공 처리 되었습니다. 따라서 공사감독은 준공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 하여야 하나,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액대로 집행하여 제작비를 포함한 총 금액 151천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 하였음. 【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2항 및 공사감독자 업무 지침】</li> </ul>
	건설사업자 선정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종면에서는 상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 건설업의 범주에 속하는 사업을 종합건설업 면허소지 업체와 계약체결 하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 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】</li> </ul>
	환경관리비 정산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종면에서는 『2017년 시종 신연리 방축뜰 농로포장공사』 외 2개소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관리비는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반영 하였으나, 준공하면서 환경관리비 정산 내역을 미 확인하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. 따라서 발주부서에는 준공 전 환경관리비 정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 하여야 하나,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집행하여 총 144천 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 하였음. 【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】</li> </ul>